

# ① 拘束適否審査請求의 範圍

## - 現行

第11條 5項

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 - 民正黨案

⑥ 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法律유보 削除)

## - 民主黨案

⑦ 누구든지 逮捕·拘禁을 당한 때에는 즉시 法律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適否의 審査를 法院에 請求할 權利를 가진다.

- 拘束은 法官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證據湮滅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發付한 令狀에 의하여 행해지는 것이므로 이를 拘束適否審査이라는 이름으로 再審査하는 것은 理論上 문제가 있고 특히 중요한 사건(國事 犯, 死刑·無期 등에 해당하는 重罪)의 경우에는 裁判에 의 由으로 하여 有無罪를 가려야 한다는 점에서 拘束適否審査를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을 수 있음. (1)

請求권

141

- 그러나 현실적으로 拘束이 身體의 自由를 심히 제약하는 것이고 심지어 被拘束者의 名譽나 防禦權行使에 지장을 줄 뿐 아니라 家族의 生計까지도 위협하게 되므로 拘束에 대한 再審的 성격의 지닌 拘束適否審은 被疑者의 人權保障에 중요성을 갖고 있음.
- 이러한 뜻에서 한 사람의 國民이라도 억울하게 拘束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國民의 身體의 自由를 실질적으로 伸張한다는 뜻에서 일단 拘束된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런 制約없이 拘束適否에 대한 審査를 청구하여 法官에 의하여 拘束의 當否에 관한 再審査를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함.
- 따라서 현재 拘束適否審査對象에서 제외되고 있는 國家保安法 위반사건, 死刑·無期 또는 短期 5년 이상의 懲役·禁錮에 해당하는 사건 및 檢事認知事件에 대하여도 拘束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國民의 拘束適否審査請求權에 아무런 제약이 없도록 함으로써 身體의 自由保障에 새로운 里程標를 마련하려는 것임.